



통보

다음 고지는 10.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

1.	통보국가: 미국 해당할 경우,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3.2 및 7.2):
2.	담당기관(Agency responsible): EPA(환경보호청) [2251]
3.	조항 2.9.2 [X], 2.10.1 [], 5.6.2 [], 5.7.1 [], 3.2 [], 7.2 [], 기타에 근거해 통보:
4.	해당제품(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울 제목. 해당할 경우,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화석연료 기반 발전설비의 온실가스 배출, 대기질(ICS code(s): 13.040), 가스 및 증기터빈. 증기기관(ICS code(s): 27.040), 회전기계(ICS code(s): 29.160)
5.	제목(페이지수, 언어, 열람 방법): 화석연료 기반 발전설비의 온실가스 배출 표준 폐지(30페이지, 영어) 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USA WTO TBT 질의처, 이메일: usatbtep@nist.gov https://members.wto.org/crattachments/2025/TBT/USA/25_04172_00_e.pdf
6.	내용: 규칙안 - 이번 조치에서 미국 EPA(환경보호청)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대한 모든 GHG(온실가스) 배출 표준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EPA는 CAA(청정대기법)에 따라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GHG 배출이 심각한 대기오염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해당 발전소의 GHG 배출을 규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EPA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GHG가 위험한 대기 오염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EPA는 대안으로 보다 좁은 범위의 요건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화석연료 사용 증기발전설비에 대한 배출 지침, 대규모 개조를 수행하는 석탄 연소 증기발전설비에 적용되는 CCS(탄소포집·저장) 기반 표준, 그리고 신규 기저부하 고정식 연소 터빈에 적용되는 CCS 기반 표준이 포함된다.
7.	적용할 경우,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8.	관련 문서: 미국연방관보(FR) 90호 25752, 2025-06-17, 미국연방규정집(CFR) 제40권 제60부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5-06-17/html/2025-10991.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5-06-17/pdf/2025-10991.pdf EPA는 2025년 7월 8일 오전 동부 표준시 11시 에 시작하여 오후 7시에 종료되는 가상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 발언자가 없는 경우, EPA는 사전 등록된 마지막 발언자가 발언한 후 15분이 지나면 공청회를 종료할 수 있다. 등록 및 상세 정보: https://www.epa.gov/stationary-sources-air-pollution/greenhouse-gas-standards-and-guidelines-fossil-fuel-fired-power

본 규칙안은 도CKET 번호 EPA-HQ-OAR-2025-0124로 식별된다. 도CKET 폴더는 Regulations.gov (<https://www.regulations.gov/docket/EPA-HQ-OAR-2025-0124/document>)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 문서, 지원 문서 및 수렴 의견에 액세스할 수 있다. 또한, [Regulations.gov](https://www.regulations.gov)에서 도CKET 번호를 검색하여 문서를 조회할 수 있다. WTO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는 2025년 8월 7일 **동부 표준시 오후 4시**까지 **미국 TBT 질의처**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USA TBT 질의처에서 접수된 WTO 회원국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EPA와 공유되며, 의견마감일 내에 접수된 경우 Regulations.gov **도CKET**에도 제출된다.

관련 통보:

- [G/TBT/N/USA/2001/Add.3](#)

9. 채택 예정일: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 추후 결정

10. 의견 제출:

의견 마감일: 2025-08-07

[] 통보일로부터 60일

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의견 수렴처: USA WTO TBT 질의처, 이메일: usatbtep@nist.gov